

환경오염과 개발의 방법론적 접근

— 환경정책과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연재피

김영인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65-40

목 차

- I. 서 론
- II.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1. 환경정책과 경제정책과의 관계
 2. 후퇴하는 환경정책
 3. 오염자부담의 원칙
 4. 지역개발과 환경정책
- III.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 IV. 환경오염의 사회경제적 배경
 1. 환경오염의 의의
 2. 환경오염의 발생형태와 원인
- V.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
 1. 환경오염의 경제학적 접근
 2. 사회적비용의 실증분석
- VI. 사회적비용과 오염자부담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적비용과 조세정책
- VII. 환경개선의 방법
- VIII. 결 론

2. 사회적활용의 실증분석

(A) 환경오염과 사회적 손실

환경악화에 의하여 초래되는 부의 효용은 명백한 경제적 손실이며,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보면 사회적 손실이다.

사회적 손실 또는 사회적 활용이란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사적경쟁 기업의 경제활동에 한해서 발생하지만 원인자인 기업의 활용에 산입되지 않고 제삼자 사회 또는 자연의 부담 및 희생으로 되는 모든 유해한 결과 및 손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활용에는 환경 및 자원문제뿐만 아니라 기술변화, 실업, 독점에 의한 손실까지도 포함된다.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발생유형도 복잡다양하고 인과관계도 복잡하고 간접적이다. 그 결과 환경오염의 사회적 활용론의 대상범위가 학자에 따라 광협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화폐가치평가와 구체적 계측방법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의 계측이 시도된 것은 극히 최근이며 아직 전국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예가 전무한 까닭에 경제정책적 기준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만한 확고한 기준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우선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수가능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직접적, 즉시적인 것과 간접적, 장기적인 것이 있으며,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경제적 후생 그 자체의 손실로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것, ② 경제적 후생 그 자체의 손실이지만 복원이 가능하며, 복원활용의 추정이 가능한 것 ③ 경제적 후생수단의 손실로서 그 손실액을 화폐단위로 평가가능한 것 등이 다.

이러한 환경파괴의 경제적 손실을 현상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① 인체(경중력) 혹은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조건에의 파괴, ② 재산가치의 파괴 또는 저하, ③ 자연적 부족 자원의 조기고갈 또는 파괴 등으로서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손실이 포괄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고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우선 과학기술처와 카톨릭의대의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조사 결과는 서울과 부산의 도심지와 공업지대의 주민이 비공업지대 주민보다 호흡기장해 발병율이 높다고 한다. 또한 보사부와 수산청의 폐수에 의한 어업피해 조사에 의하면 1971년에는 연간 약 8억54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공해로 인한 어장폐쇄의 연구손실(10년 기준)도 그 규모가 컸던 것이다. 폐수광양만에 방류되는 정유의 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은 해수욕장의 폐쇄와 자급 양식장의 전멸상태를 초래하여 어민의 피해는 시설비, 인건비, 연간 소득손실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울산시와 각 공업건설에 따른 어민피해도 피해려니와 서울시의 경우 1965~72년 사이에 한강수의 오염도(BOD)가 1ppm상승할 때마다 급수 1,000톤당 약포투입량이 132원씩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상황을 살펴 보았는데 오염현상이 누적적으로 현재화되고 다발화됨에 따라 기술정도가 점차 비교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가지 지적할 점은 환경피해의 사회적 손실은 지역성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즉 발생형태와 피해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B) 사회적비용의 실증적 접근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접근은 그 예가 직접적 손실인 피해액과 간접적 손실인 방지비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비용론의 발전은 환경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오염발생 기업이 방지비용의 부담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통상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오염발생자의 개별적 책임을 밝히고 피해보상 및 환경보전 비용을 오염자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론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즉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을 목표로 전개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자세는 오염발생의 예방에 있다. 환언하면 사회적 비용발생

의 예방이다. 발생한 피해를 복원한다거나 화폐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차선택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예: 생명 또는 질병의 고통과 상실된 특정시간), 복원 및 화폐적 보상이 예방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경미한 피해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소요경비가 더 많이 드는 예도 있다.

사회적 비용을 축소화시키는 상기 두가지 방식 ① 예방 ② 복원과 보상에 대응해서 사회적 비용의 계측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계측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발생한 피해의 화폐적 환산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대단히 무리한 요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한 「호프만」방식은 하나의 실무적 편법이다. 복원비용의 계측을 사회적 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염방지 비용을 가지고 사회적 비용으로 하는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측정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대책의 기본자세와도 일치한다. 이때 예방비용 총액에서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사회적 비용이다. 다만 이미 발생한 피해의 실물단위에 의한 계획도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비용=영 즉 무공해(Zero pollution)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종종 인간활동 특히 산업활동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무공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행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비용이 영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문자 그대로 반드시 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 환언하면 Social Welfare minimum이 확보된다면 만족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다.

W. P. Kapp는 사회적 비용의 계측도 이러한 Social Welfare minimum의 개념에 의하여 즉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최저생활 수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구체화 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따라

서 여기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측하는 것이 과제이다. 환경오염 방지비용의 계측에는 실제로 전문기술지식을 많이 요하는 만큼 방지시설 비용책정에 제약이 있으나 다소의 오차범위를 설정하더라도 환경보전 비용의 크기와 그 중요성은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므로 도시하수 및 산업폐하수의 오염방지 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C) 수질오염의 방지비용 추정

총량적 접근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질오염의 발생원인은 산업폐수와 도시하수로 대별된다. 따라서 수질오염의 전망은 산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수요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용수 <표-3>

전국용수 수급계획

(단위: 백만원, m³/년)

區分 \ 年度別	1974	1976	1981	1986
總用水需要	12,657	13,679	17,202	21,102
生活用水	1,240	1,441	2,059	2,767
工業用水	1,609	2,036	3,704	5,896
農業用水	6,825	7,210	8,456	9,456
雜用 用水	2,983	2,983	2,983	2,983

資料: 建設部, 水資源開發調查年報(第8卷, 1978.12)

수급계획은 <표-3>과 같다. 이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소비 및 생산과중을 거치면서 폐, 하수로 전환되어 각수역으로 방출된다. 폐하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오염과 울산, 여수, 마산 등의 해역오염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강의 예를 보면 1971년도에 7.5km 하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EOD)이 상수수원지 또는 유수지로 부적합한 10ppm을 초과하였으며, 1985년도에는 7.5km지점에서 45ppm, 12km 지점에서 55.4ppm 그리고 21km 지점에서 73.7ppm의 오염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것은 산업폐수와 도시하수의 무관심한 방류에 기인하며 사회적 손실의 저감을 위해서는 각 배수망의 말단에 폐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방지시설의 설치 및 도용에 소요되는 합계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상수급수원으로서 또한 유영장으로서 이용가능한 최저수준인 BOD 10ppm이

<표-4>

산업폐수 처리시설 소요경비 추정

(단위 : 10만원, 1,000㎡)

年 度	1日工業用水量	處理率	處理効率	1當施設單價	所費費用
1981	10,148	50 %	50 %	60 萬圓	1,522.2
1986	16,153	75 %	60 %	100 萬圓	7,268.9

하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검정하면 <표-4>와 같다.

우선 산업폐수처리시설 비용을 보면 1981년도 공업용수 수요기준 50%처리효율을 가지고 생처리할때 약 1조 5,222억원이 소요되며 1986년도 60% 처리효율을 유지하려면 약 8,462억원이 소요되고, 1986년도 60%처리효율 기준으로 약 3조339억원이 소요된 것이다.

이러한 소요시설 비용에서 실제로 투하될 투자비용을 공제하면 장차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부담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표-5> 도시 폐하수 종합처리시설 소요비용추정

(단위 : 10만원, 1,000㎡)

年 度	1日生活用水量	處理率	處理効率	1當施設單位	所費費用
1981	5,041	50 %	50 %	60 萬圓	846.2
1986	7,581	66.7 %	60 %	100 萬圓	3,033.9

VI 사회적비용과 오염자부담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환경오염이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이라면 그 해결을 위한 공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테두리 안에서 최저 경제발전이 추구된다면 환경과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환경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전제가 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환경오염 발생원의 파악문제이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발생형태가 복합화, 광역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아울러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과피의 사회적 손실 또는 방지조치를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채의 책임소재와 그 평가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환경오염은 명백한 사회적 손실이므로 그것을 평가하고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다.

셋째, 공해인정제도의 확립이다. 환경오염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인 주민이 체념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환경대책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은 일반국민의 인명존중 즉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존중이라는 주민의 생활권(환경권) 의식이다. 이러한 주민의 생활중 의식의 바탕 위에서 공해인정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네째, 환경오염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다. 환경오염의 파급이 방제기술을 포함한 기술개발과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소요 예산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다섯째, 공해보다 생활이라는 개발이념의 확립이다. 환경문제는 선진국 또는 선진지역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후진국 또는 후진지역에서는 공업을 안이하게 무조건 수입하는 경향이 있어 환경과피가 급진하게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화를 이루도록 개발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환경대책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 사회적 손실 내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환경피해의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주민의 관심을 집결하고 그 집결된 힘을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작용시키는 것이 첫째 과제이다. 환경오염의 방제를 원인자인 개별기업이나 개인의 양식과 자발성에서 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주민운동의 전개가 환경보전의 기본적 「모멘트」가 될것임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구제국에서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대책의 구체적 수단은 대별해서 간접적 규제와 직접적 규제가 있다. 간접적 규제란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보조금이나 오염활동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오염활동을 억제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재정투융자, 조세감면 등 보조금정책은 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게 귀납되므로 「납세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한다. 직접적 규제는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시장「메카니즘」의 기능상 한계에 근거하여 오염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배출기준의 총량규제, 특정생

산활동의 폐지 등 행정적 규제조치를 말한다. 특히 환경정책에 성공적이었다는 일본 환경정책의 특색의 하나가 「행정지도」라는 직접적 규제수단이었다.

간접규제와 직접규제 간의 선택은 소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제약을 받으며,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비용면에서나 분배의 효과면에서 간접적 규제수단 특히 조세의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사회적 비용과 조세정책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사기업의 이윤원리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적 의미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은 환경오염 방지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이윤원리를 억제하는 것이다. 즉 오염자부담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 약칭 PPP)에 비추어 볼때 사회적 비용의 의의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발생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조세체계는 커다란 불공평을 내포하고 있다.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비롯한 각종 공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들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저렴한 용지, 용수 등 집적이익이라는 외부효과는 독점적으로 흡수하면서도 그들의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는 전무에 가까운 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불공평이라 하겠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재정수요 팽창을 야기하는 현단계에서는 기존 세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필요성의 근거를 밝히고 그 한계성을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우선 개혁의 필요성을 보면

첫째, 세제를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문제들이다.

둘째, 일반적 조세부담 배분의 근거원칙을 현대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회적 비용원칙이 고려되지 않으며 안된다.

세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세형태를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지역성”을 반영하여 합성세제, 「플라스틱」, 중유 등의 소

비세, 주차장세와 환경보전에 등 자동차관계세, 공병회수세, 공장배수세, 사업세 등의 매상고 과세 등이 제안되었고 또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세제, 공병 등과 같이 인과관계가 직접적이고 명확한 오염은 소비자에 의해 실현되지만 실질적인 원인이자 오염물질을 함유한 상품 생산자이므로 기존 부가세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같이 특정기업의 오염기여율 측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재산세나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과해될 수도 있다. 이때 과세표준인 원세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불공평이 확대될 것이다.

한편 사회적 비용원칙에서 본다면 소득과세 보다도 외형표준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사회적 비용의 발생원인이 시장경제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초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원칙에 비추어 소득세제의 개선도 점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I 환경개선의 방법

환경문제의 해결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관계하여 예견적 환경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다 어려운 상태하에서 환경정책의 강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환경정책은 경제를 해치느냐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많았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이 문제에 관하여 산업계나 노동계로부터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미국의 솔츠국무장관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환경정책이 다액의 비용을 비능률적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OECD는 미국 및 일본의 거시적 「모델」분석에 의하여 환경정책이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으며, 지표에만 의할 때는 호영향을 준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방지투자가 필요한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낮은 성장율이 지속된다고 예상될때도 아무리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성장이 있는 한 정화기술의 어느 정도의 진보가 없이는 환경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비용효과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요한다.

환경정책의 비용이 각 선진국가에서는 거대화되어 오염방지를 위한 지출이 GNP의 1~2%에 상당하게 되는데 대하여 오염에 의한 손해는 GNP의 3~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정책은 경제를 해치는 것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볼때 환경의 보전과 경제발전은 양립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 내지 상호보강하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오늘날의 국제적일치된 표현임을 강조해두는 바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몇가지 주요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설득이다. 이것은 오염자들이 사회적 의무로서 오염시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타인의 제소를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소제도를 들 수 있다.

세째로 금지방법으로서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배출기준의 설정 및 집행이다.

네째로 직접규제의 행정적, 사법적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벌과금 또는 경제적 특혜를 주는 방법이다.

여섯째로 벌과금제도로써 오염권(Pollution Rights)과 오염벌과금(Pollution Charges)를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때 환경개선의 방법들은 모두 몇가지 공통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각 방법마다 특정한 형태의 어떤 목표 또는 최대허용 수준의 설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염원의 비용 및 혜택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최상의 접근방법이 그럴듯한 추정을 하게 되어 실제로 필요한 원래의 목표를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어떠한 오염배제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용이하거나 공평 또는 공정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분명히 불공평하며, 불공정한 우리의 현재제도보다 나아질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이 오염을 발

생시키지 않는 것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VIII. 결 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우리 세대의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은 단기 또는 가까운 장래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불과 오개년 앞의 계획을 작성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하여 환경정책은 지구전체의 문제로서 우리 인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자원고갈, 과잉인구, 식량부족 및 환경오염의 악화 등이 난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우선 생물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악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 30년, 50년 또는 100년의 대계를 세워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경제정책이나 기타 정책수립과는 판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 목표를 먼 장래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책으로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이므로 어떠한 만족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기술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을 요하는 문제라 하겠다.

그 이유는 제아무리 기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가 정책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면 무의미할 것이며,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법규정도 이를 준수

하는데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는 기술적 내지 경제적인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문제의 윤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제도나 정책은 썩어 빠진 육체와 같이 제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환경정책의 수립도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수립된 정책이 특정한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

만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타분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비교해 볼때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여 상반 또는 경합되는 의견간에 조화를 시켜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요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해외환경

영국, 환경보호 우표 발행

최근 영국의 왕립체신청은 우표수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국적인 사업으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우표를 만들고 있다.

“우리의 세상 : 자연의 국제적 이미지”라는 제목의, 자연과 관련된 30종의 우표 판매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영어, 독일, 불어, 스웨덴어의 4개국어로 쓰여진 매력적인 16페이지짜리 설명책자가 포함되어 있다. 전세계적인 환경보호와 국제적협조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우표발행은, 영국의 왕립체신청, 유엔, 그리고 기타 4개국 체신당국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영국은 바다쇠오리, 뒷부리장다리 물새떼, 검은 머리물떼새, 부비새 등 조류보호를 특집으로 다루는 4종류의 우표를 왕립협회 100주년 기념으로 금년초에 발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지방에 대한 연구보조에 이용되는 동물 및 장비를 그린 5장의 남극지대 연재우표를 발행했다. 캐나다는 4장의 나비우표를 발행했고, 스웨덴은 우랄 울폐미를 포함한, 서식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에 대한 6장의 우표를 발행했다.

유엔은 기후에 관한 6장의 우표를 발행했으며, 또한 북미의 야생생활의 50가지 디자인에서 선별한 5종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우표의 도안은 총천연색이며, “우리의 세상” 표지에 있는 포켓에 끼워진 우표철은 투명한 아세테이트띠가 부착되어 있어, 30장의 우표를 보호하면서 진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세상”모음집은(영국에서 7.50파운드)

영국 우표수집소, 영국 우표수집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유엔본부 및 기타 4개 관련국가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이 우표 판매가 성공을 거둔다면, 앞으로 새로운 판을 발행할때 다른국가들로부터 오는 자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

(영국산업뉴스 제공)

